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064

발의연월일: 2022. 8. 30.

발 의 자: 윤준병·김정호·김철민

김성환 · 양정숙 · 안규백

오영환 · 이상헌 · 신정훈

이용선 · 민형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, 동 제도는 올해 2022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및 농업인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고 있음.

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 · 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,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제도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72조제1항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세 과세특례) ①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----2027년 12월 31일----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[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(當期純利益)을 말한다]에 「법인세법」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)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 만 해당한다)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 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「해당금액이 20억원(2 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

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]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이하 이 조에서 "당기순이익과세"라 한다)한다. 다만, 해당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하지 아니한다.

1. ~ 8. (생략)

② ~ ⑥ (생 략)

1. ~ 8. (현행과 같음)
(2) ~ (6) (현행과 같음)